

한·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7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11.
발의자 : 전재수 · 정재호 · 이찬열
윤준호 · 신창현 · 최인호
유성엽 · 박재호 · 김정호
이종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,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한·아프리카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·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

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 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6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한·아프리카 재단법안 일부개정법률안

한·아프리카 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미성년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미성년자</u></p> <p>3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 <p>4. <u>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u></p>	<p>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3. <u>미성년자</u></p> <p><삭 제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